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80 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조정훈·최수진·서명옥

박충권 · 김용태 · 정성국

김대식 · 서지영 · 박형수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대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, 즉 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1.9%(10,209명),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.1%(14,685명)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.

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 상의 문제로 교육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행동중재 지 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.

이에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는 등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8조의2(행동중재전문교사의 배치 등)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 획 수립・실행・평가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(이하"행동중재전 문교사"라 한다)을 둔다.
 -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 재전문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 -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교사의 자격, 업무 및 배치,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, 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8조의2(행동중재전문교사의
	배치 등) ① 교육부장관 및 교
	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
	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
	한 행동중재계획 수립・실행・
	평가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
	교원(이하 "행동중재전문교사"
	<u>라 한다)을 둔다.</u>
	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
	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
	행동중재전문교사를 지원하는
	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	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
	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
	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
	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
	<u>수 있다.</u>
	④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
	교사의 자격, 업무 및 배치, 제
	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,
	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
	의 구성・운영 등에 관하여 필
	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	한다